대구광역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상문화재

- 독무재[문화재자료 제17호]
- 위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88-1
- 하효자정려각[문화재자료 제18호]
- 위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89-9

문화재구역

■ : 문화재구역

구역별 허용기준

항목	허 용 기 준	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	용도
1구역	• 원지형 보존		
2구역	• 건축물 최고높이 14m(4층)이하	• 건축물 최고높이 18m(4층)이하	
3구역	•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	• 대구광역시장 허가사항 -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문화재보존 조치(원형보존,이전복원, 전문가 입회조사,매장문화재 발굴조사) -문화재 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원지형 절토 및 성토 행위 -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-진동배출시설,대기오염배출시설,폐기물처리시설,위험물제조 시설,분뇨처리시설 설치 -도로,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•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한 건축물 높이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-기준 초과시 "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" 의견에 따라 결정함 -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계단탑,승강기탑,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-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,증축,재축,개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시설,분뇨처리시설 설치 -도로,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		

축척

0 25 50 100m

A3 : 1/5,000